

의안번호	2221076
의 퇴 인	김은혜의원
회 답 일	2026.9.10.
추계번호	26B4513

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10조의3 (재정적 지원)	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포장폐기물의 발생과 1회용품의 사용을 억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홍보 및 마케팅 지원, 재정적 지원이나 금융 관련 법률에 따른 자금 융자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. 3. 1회용품을 대체할 수 있는 신소재 및 친환경 포장 기술의 연구·개발	의무규정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(미실시 및 미첨부 근거 규정)
1	안 제10조의3 (재정적 지원)	×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 사유

- 개정안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1회용품을 대체할 수 있는 신소재 및 친환경 포장 기술의 연구·개발을 수행하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 등에 대하여 홍보·마케팅, 재정적 지원 또는 자금 융자 등의 지원을 하는 경우 신규사업 추진에 따른 국가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 -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, 현재 1회용품을 대체할 수 있는 신소재 및 친환경 포장 기술의 연구·개발을 수행하는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재정적 지원 또는 자금의 융자 등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

- 다만, 기후에너지환경부는 「다회용기 택배 시장형성 지원」 사업을 통해 다회용 택배상자 대여업체의 회수비·세척비 및 재공급비 등의 추가 지출비용을 보조하고 있으며, 해당 사업의 예산은 2026년 기준 13억 7,800만원임 (참고자료 참조)

□ 다만, 추가재정소요는 지원 대상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의 범위, 연구·개발의 대상 및 규모, 지원 방식 및 수준, 지원 대상 및 규모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, 현시점에서는 관련 사항이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아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임

□ 이상의 논의를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현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개정안은 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함

Ⅲ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경제비용추계과	장우윤	예승우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장우윤	02-6788-3735	jangwy93@assembly.go.kr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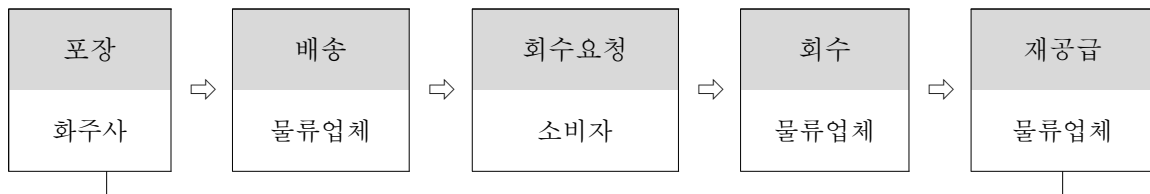
[참고자료] 다회용기 택배 시장형성 지원

(자료: 기후에너지환경부)

□ 추진배경

- (목적) 1회용 택배상자를 다회용으로 대체하여 포장폐기물 원천 감량
- (근거) 자원재활용법 제10조의3(재정적 지원 등) 제2호
* 다회용기(같은 용도에 두 번 이상 계속하여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)를 회수·세척하여 재공급하는 사업
- (지원대상) 다회용 택배 배송·회수·세척시스템을 갖춘 물류업체

< 다회용 택배상자 보급사업 프로세스 >



□ 산출내역

- 다회용 택배상자 대여업체의 추가 지출비용(회수·세척비 일부) 국고보조
* 환경부에서 공모를 통해 다회용 택배상자 사업자 선정 및 직접보조(민간경상보조)

< 1회용 및 다회용 저온 택배상자 소요비용 산출표 >

(단위 : 원)

항목	1회용 (A)	다회용 (B)	차액 (B-A)	비 고
택배상자비	1,400	822	△578	다회용상자 재사용 등에 따라 낮아짐
아이스팩	500	500	—	변동없음(다회용도 같은 가격)
택배 포장비	600	600	—	택배를 포장하는 비용은 동일
택배 배송비	2,000	2,000	—	택배를 배송하는 비용도 동일
회수비용	0	1,800	1,800	다회용 택배는 회수비 추가발생
세척비용	0	84	84	다회용 택배는 세척비 추가발생
재공급비용	0	34	72	다회용 택배는 공급비 추가발생
합계(원/개)	4,500	5,840	1,378	1회당 1,378원의 추가지출 발생

* 시범사업('21~'22) 결과를 1년(365일)간 추진하는 것으로 환산하여 산정

- (소요예산) $(1,378\text{원/회} \times 1,000,000\text{회}) = 1,378\text{백만원}$